
연명의료결정제도

본 정 노 인 요 양 원

목 차

- I 목적
- II 주요용어
- III 주요내용
- IV 관리체계
- V 기록 열람신청
- VI 절차도
- VII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VIII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I 목적

: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II 주요용어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기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기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기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연명의료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호스피스·완화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Ⅲ 주요내용

1.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가. 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 나.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 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2.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Ⅳ 관리체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종교계·윤리계·법조계·환자단체계 위원 총 15인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기구로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관리·감독, 종사자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며,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V 기록열람신청

1. 신청가능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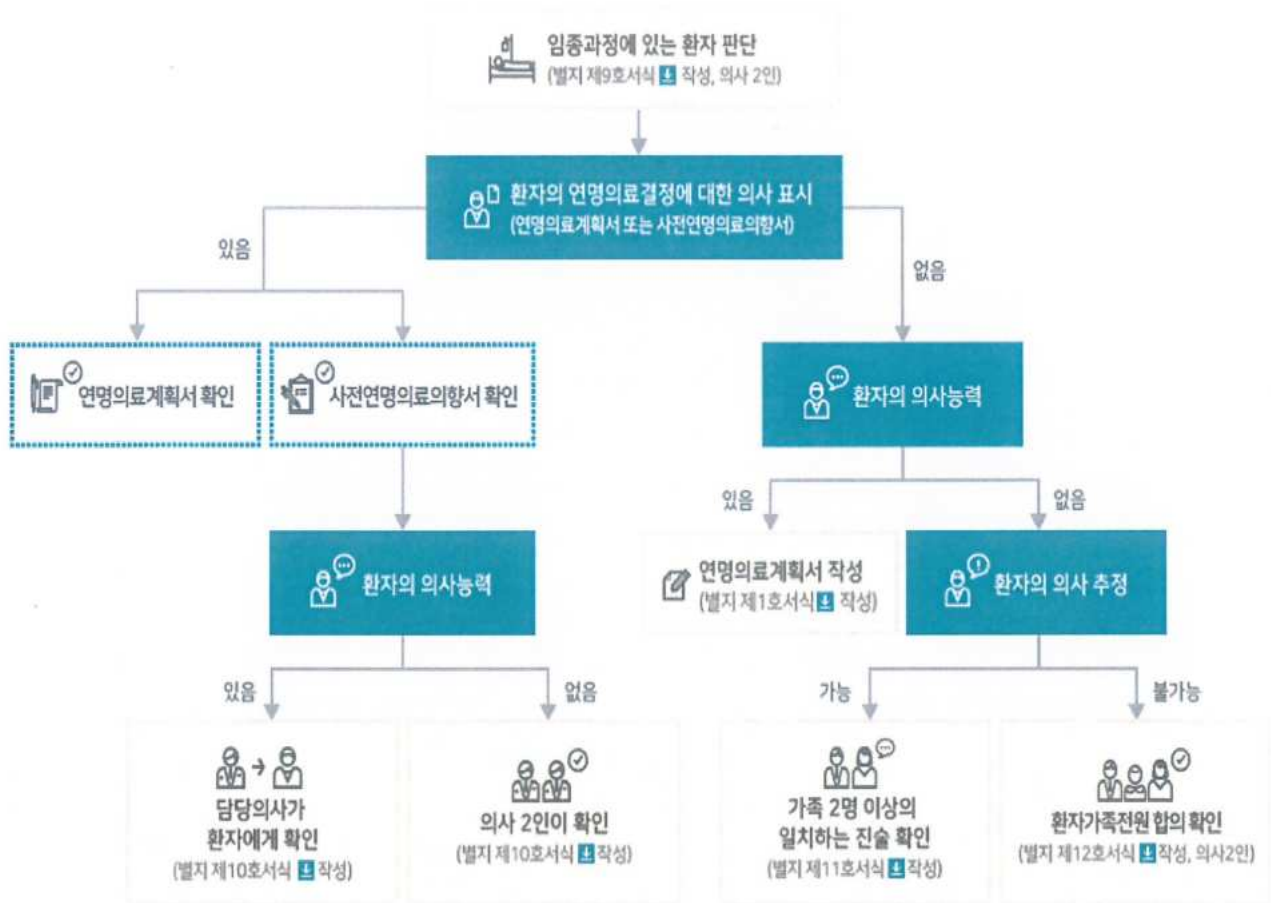
- 가. 연명의료계획서
-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마.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 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기록 (해당의료기관으로 직접 신청)

2. 신청가능자: 환자가족 (연령제한 없음)

3. 신청방법 :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4. 안내사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VI 절차도



VII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2. 작성 가능 기관

-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등록기관 찾기】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7453m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252 (신정리 612-3)	1577-1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 보건소	8057m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043-201-3427	
진천군보건소	8792m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로 1길 11-8		
국민건강보험공단 증평출장소	11.7km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48	1577-1000	
증평군 보건소	12.5km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아우내온빛복지관	12.9km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선2로 51	041-556-6606	
청주내덕노인복지관	13.9km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정대로62번길 1-18	043-216-9810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15.4km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57(운천동)	1577-1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보건소	15.6km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동로 88 (북대동) 청주시 흥덕보건소 본관	043-201-33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5.9km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043-279-2340	

4.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2)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마.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3)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5. 관련 서식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작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호스피스 이용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확인	☐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	소재지	
	상담자 성명	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자 (서명 또는 인)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모두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아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별
문서로 작성하는 서식**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①심폐소생술 ②혈액 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활용
⑤체외생명유지술 ⑥수혈 ⑦혈압상승제 투여 ⑧그 밖의 연명의료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 |
|-----------------------|---|
| 본인 확인 | 신분증 지참 후 등록 기관 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상담 및 작성 | - 1:1 상담
-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 등록 및
효력 발생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
| 등록증 수령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송됩니다. |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744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검색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대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대면으로 소속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변경이나 철회는
꼭 처음에 작성했던 등록기관에 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http://lst.go.kr>

대표번호
1855-0075

VIII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



2. 작성 대상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구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 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3. 작성 가능 기관(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가능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4. 의료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연명의료계획서 - 작성 가능 기관- 의료기관 찾기】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보기
진천호병원	11.5km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반지길 54	043-537-0035	
청주성모병원	12.5km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주충동)	043-219-8551	
서로손병원	13.6km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성대로 98 한길빌딩 서로손병원	043-211-0663	
첼로병원	14.2km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2	043-211-9090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5.9km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사직동)	043-279-2716	
의료법인원광의료재단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16.1km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5-0, 원광효도요양병원	070-7039-4983	
씨엔씨푸른병원	17.3km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34-0 (강서동)	070-7204-0505	
충북대학교병원	17.5km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043-269-8819	
(의)한마음재단하나병원	17.6km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청주하나병원	043-230-6190	
씨엔씨재활의학과병원	17.7km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83-0, (가경동)	043-239-8114	

5.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3)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6. 관련 서식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31.>

연명의료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합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자 상태 []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호스피스 이용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담당의사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 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녹화 [] 녹취 ※ 법정대리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1. 연명의료계획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종단결정**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하는 서식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술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①심폐소생술 ②혈액 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체외생명유지술 ⑥수술 ⑦혈압상승제 투여 ⑧그 밖의 연명의료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대상 확인
- 상담·설명
- 작성 및 등록
- 통보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전국 455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검색 방법

홈페이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어떻게 활용되나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환자가 이미
제공 받고 있는 시술을 **종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FAQ

Q 연명의료계획서도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FAQ

Q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연명의료종단을 원하지 않아도
종단할 수 있나요?

A

종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환자가족이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